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0-153호

2020년 국유임산물(입목처분-이만리) 매각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종	수량				용도	예정 가격 (천원)	소재지
	본수 (본)	입목재적 (㎥)	조재율 (%)	생산예정량 (㎥)			
계	25,081	3,116.29		2,420.41		21,800	전남 화순군 청풍면 이만리 산11 외 2
리기다소나무	179	22.92	82	18.79	칩, 펄프		
중부지방소나무	1,541	386.05	79	304.98	칩, 펄프		
굴참나무	6,432	1,119.76	79	884.61	칩, 펄프		
신갈나무	2,588	274.15	78	213.84	칩, 펄프		
기타활엽수	14,341	1,313.41	76	998.19	칩, 펄프		

※ 반출기간: 물건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공고등록일: 2020. 12. 24.(목) 16:00~

나.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2020. 12. 24.(목) 16:00~2020. 12. 31.(목) 16: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1](http://www.onbid.co.kr/) 전자입찰

라. 개찰일시: 2021. 01. 04. (월) 10:00

※ 개찰 및 낙찰자 선정에 1시간가량 소요되며, 개찰 후 온비드(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순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국유임산물 벌채 및 반출 관련 사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입찰자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물건 및 현장 상태(매각 수량, 품등, 반출여건 등)를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고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고문에 적힌 내용

2)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붙임 1)의 내용 및 계약조건

3) 계약특수조건(붙임 2)

4)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여 생산량 및 수량 품등, 반출여건 등 제반요건을 확인

1) 이하 온비드로 표기함.

나. 매수자는 벌채지 재해방지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벌채지 벌근은 최대한 낮게 벌채하며, 조재산물은 계곡부 등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국유임산물 반출을 위한 임산물 운재로 개설 시 임산물 운반로 시설 완료 후 반드시 서면으로 준공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국유임산물 반출해야 하며 운재로는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임산물의 반출 완료 후에는 임산물 운반로에 적정간격을 유지하여 횡단개거(물길 끊어주기)를 설치하야여 합니다.

마. 입목처분 사업(벌채사업, 임산물 반출 작업 등) 실행 중 발생된 민원은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매수 산물 반출 시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우리 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2, fax061-740-9349)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 본 물건은 산재보험 가입비용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였으므로, 현장인도 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및 납부영수증을 제출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 건은 자격요건이 필요한 물건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

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납부의무금의 체납이 없는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다음 각호 1~5 중 1개 이상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자격증 사본 제출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업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 상기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2020. 12. 31.(목) 10:00까지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응찰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제출처: 순천시 순천만길 180, 순천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fax 061-740-9319

5. 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의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으로, 온비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시각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횟수는 1인당 1회로 제한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공고문 내용, 계약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 전에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3)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온비드 장애발생으로 회원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해 해결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일반 및 법인사업자)의 전산장비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번호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입찰

다. 입찰번호별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 온비드상에서 지정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가능하며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까지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

라.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물건을 낙찰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는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귀속하고, 해당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이상 최고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추첨방법(자동선택기능)을 사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0. 기타 알림내용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 법령 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사항과 “붙임2”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및 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 물건, 산물수량, 반출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 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관리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시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61-740-9311)으로, 매각 임산물에 관한 문의는 경영자원조성팀(☎061-740-9331~4)로 문의하여 주시고, 전자입찰참여 및 투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또는 전화 1588-5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1부.
2. 국유임산물매각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020. 12. 15.

순천국유림관리소장

<붙임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입목 나무부피)[㎥]	조재(造材, 재목 만드는 것)/제탄(製炭, 탄 제조하는 것)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 인

매 수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1조(대금납입)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계약담당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계약담당관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매수인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매수인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매수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관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계약담당관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베어진 나무)・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계약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관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매수인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계약담당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2>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2020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계약과정 및 물건 반출과정 전반에 적용한다.
2. 매수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물건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반출완료 후 적지검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3. 소나무류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작업 전에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서식)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한다.
4. 산원지에 작업로(임산물 반출로)의 시설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매수자가 설치 및 보수를 실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운재로의 시설은 지양하여야 한다. 작업로의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소에 작업로 준공검사를 득한 후 임산물을 반출할 수 있다.**
5. **물건 반출 후 재해예방을 위해 운재로의 보수, 배수로정비 등은 매수자가 실행해야한다. 반드시 작업지역의 산간계류부분 운재로 노면에 20m~30m 간격으로 횡단개거의 설치 등 수해예방조치를 한다.**
6. **허가 없는 추가 운재로 개설 등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7.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경우, 매수자는 반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해당사자와 협의 후 반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매수자가 직접 처리한다.**
8. 생산재 반출을 완료한 뒤 매수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반출 완료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이후 적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적지검사 시 계약조건 및 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매수자에게는 이를 지체 없이 즉각 보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끝.

<붙임 3>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국유임산물(입목처분-이만리) 매각 계약**

《계약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순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매 수 인 성 명 :

담당공무원 성 명 :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